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42
----------	-----

2019년 3월 6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2월 1일, 서울특별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19년 2월 7일

3. 상정일자

○ 제2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6차 교육위원회

(2019년 3월 6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1. 제안이유

○ 2019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가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증원 (안 제2조): 총 161명 (7,255명 → 7,416명)

○ 본청 · 교육지원청 ·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증원

: 증 134명(6,759명 → 6,893명)

○ 교육전문직원 정원 증원

: 증 27명(491명 → 518명)

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증원 (안 제4조 관련 별표 3)

○ 총계 증원: 증 161명 (7,255명 → 7,416명)

- 일반직 정원 증원: 증 134명 (6,761명 → 6,895명)

· 5급 이하 소계: 증 134명 (6,679명 → 6,813명)

- 특정직 정원 증원: 증 27명 (491명 → 518명)

·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 증 27명 (441명 → 468명)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19년 2월 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442호로 제출되어 2019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2019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가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총액인건비와 기준정원에 대한 검토

- 동 개정조례안은 2019년 총액인건비¹⁾ 기준인원에 따라 현행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통보에(학교혁신정책과-350, 2019.1.18.) 따른 2019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규모는 5,635억 8천 3백만원으로 2019년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상의 지방공무원 인건비 5,256억 6천 4백만원보다 379억 1천 9백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통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기준인원은 일반직 6,918명, 교육전문직 509명 등 총 7,427명을 책정하였는바, 현행 조례의 일반직 6,761명과 교육전문직 491명의 총 7,252명 보다 175명이 더 증가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은 총액인건비의 범위에서 일반직은 기존 보다 134명이 증가한 6,895명으로 조정하였고, 교육전문직은 기존 보다 27명이 증가한 51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교육부가 통보한 총액인건비 규모와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상의 지방공무원 인건비 규모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바,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총액인건비 범위에서 조직·인력 운영을 위한 재정상 여유가 있는 상황이므로 동 개정조례안과 같은 정원 조정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 한시정원의 소멸과 관련 직급 증원에 대한 검토

- 동 개정조례안은 정원 조정과 관련하여 조례 제6678호 「서울특별

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총액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은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총액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총액인건비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 운영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총액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 제2조와 [별표3] <비고>를 삭제함으로써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 승인 검토결과 통보’(지방교육자치과-3852,2017.8.23)에 따른 한시기구(교육공간추진단)의 부서장(4급) 정원을 삭제하고 있습니다.²⁾

- 다만 동 4급 정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³⁾ 따라 한시기구의 폐지로 자동소멸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 개정조례안에는 여전히 4급 정원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있는바, 향후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동 정원의 활용여부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
- 2) 동 한시기구는 지난 제284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어 폐지되었음.
 - 3)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한시정원) ① 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한시정원을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이 끝나는 날에 소멸된다.
 - 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相計)하여 조정할 수 없다.
 - ④ 한시정원과 직급별 정원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Ⅶ.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255” 를 “7,416”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6,759” 를 “6,893”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491” 을 “518” 로 한다.

조례 제6678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7,255명</u>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u>6,759명</u> 3. 교육전문직원 정원 <u>491명</u> 	<p>제2조(정원의 총수) ----- ----- ----- --<u>7,416명</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 ----- 3. ----- <u>518명</u>
<p>조례 제6678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 제2조(한시정원) 제2조 및 별표 3의 개</p> <hr/> <p><u>정규정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u></p>	<p>조례 제6678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 <삭제></p>

현 행						개 정 안					
[별표3]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별표3]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총 계	<u>7,255</u>					총 계	<u>7,416</u>				
정무직 계	1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u>6,761</u>					일반직 계	<u>6,895</u>				
2·3급	1		1			2·3급	1		1		
3급	9		9			3급	9		9		
3·4급	3		3			3·4급	3		3		
4급	39		28	11		4급	39		28	11	
4·5급	7		7			4·5급	7		7		
5급 이하 소계	<u>6,679</u>					5급 이하 소계	<u>6,813</u>				
전문경력관 소계	9					전문경력관 소계	9				
연구사 소계	14					연구사 소계	14				
별정직 계	2					별정직 계	2				
5급상당 이하 소계	2					5급상당 이하 소계	2				
특정직 계	<u>491</u>					특정직 계	<u>518</u>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50		28	22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50		28	22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u>441</u>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u>468</u>				
<p><비고> 제2조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본청의 지방서기관 1명으로 한다.</p>						<p><삭제></p>					